

서울특별시

우 100-744 서울. 중구 태평로1가 31 / 전화 (02)731-6372 , 6772 / 전송 (02)731-6374

문서번호 건행30314 -35224

시행일자 1992. 11. 3. ()

경유 <제1안>

수신 부서결재

공문



취급		시	장
보존		 법무담당관 심사필 no. 1796	
국	(전 결)		
고			
계		법무담당관 심사필	
기간	정	의	진
			협 조

제 목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

1. 종건토일30500-2374('92. 10. 29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서울시고시 제1990-280호('90. 8. 22)로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한 "신내도시고속도로(신내입체시설-구리사계간) 건설공사"의 실시계획인가를 편입토지주가 및 사업기간연장의 사유로 변경인가 신청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와 동법시행령제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 및 고시 하고자합니다.

첨 부 : 변경인가고시안 1부
 변경인가신청서 1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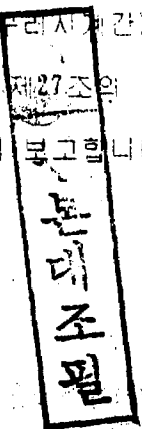
<제2안>

수 신 : 건설부장관
 도시정비과장
제 목 :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 변경인가보고

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(도로) "신내도시고속도로(신내입체시설-구리사계간) 건설공사"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의거 별첨 고시문(서울시고시 제1992- 호)과 같이 변경인가 및 고시 하였기 보고합니다.

첨 부 : 고시문 1부 끝.

서울특별시



<제3안>

수신 : 수신처참조

제목 : 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 변경인가 통보

1. 종건토일 30500-2374('92.10.29) 호와 관련임.

2. 도시계획사업(도로) "신내도시고속도로(신내입체시설-구리시계간) 건설공사"의 실시
계획 변경인가를 도시계획법제25조 및 제26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및 제27조의 규정에의거 별첨
고시문과 같이 변경인가 및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할것 .

첨부 : 고시문1부 끝

서 문 특 별 시 장

수신처: 종합건설본부장, 도로계획과장, 중랑구청장(건설관리과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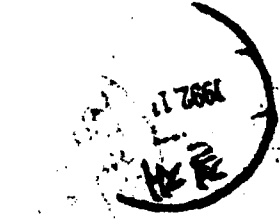
<제4안>

수신 : 홍보계획담당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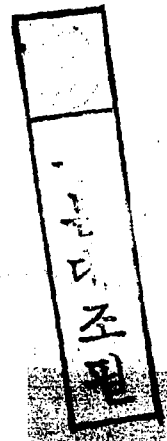
제목 : 시보게재의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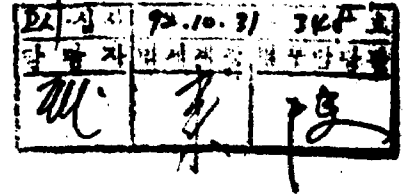
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 변경인가한 "신내도시고속도로(신내입체시설-구리시계간)
건설공사"의 고시문(서울시고시 제1992- 호)과 토지및물건조서를 별첨과같이 시보에 게재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문사본및 토지, 물건조서 각2부 끝



건 설 행 정 과 장





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 변경인가

1. 서울시고시 제1990-280호('90. 8. 22)로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인가한 "신내도시고속도로 (신내입체시설-구리사계간) 건설공사"을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실시 계획변경인가 하였기 동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(토목1부), 중랑구 ~~환경~~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2. 10. 3.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중랑구 신내동 331의2번지 - 신내동 산1의7번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 : 도시계획사업(도로)
- 명칭 : 신내도시고속도로(신내입체시설 -구리사계간) 건설공사

다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 (종합건설본부)

라. 사업규모 : 도로 : B = 36M . L = 1,710M

인터체인지 : 1개소 (교량 : 2개소)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: 당초 : 인가일로부터 - '92. 8. 21
변경 : 인가일로부터 - '93. 8. 21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지적,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서
: 별첨(추가편입토지 및 물건조서)

사.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4조 제3항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: 별첨(추가)




토 지 조 서

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

사업시행자 주소 :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7

사업의 종류 : 신내도시고속도로(신내입체시설-구리시계)건설공사

일련 번호	소재지 지번	지목	지적 (M)	편입 면적 (M)	실제 이용 상황	소유자		관계인			비고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내용	
1	신내동 337-4	답	400	92	전	심성구	성북동 1가 109				
2	330-5	전	438	93	전	배영환	청량리 235 미주A 7동 706호				
3	82-1	전	267	11	전	백홍원	신내 84-3				
4	산45-2	임	5	5	전	백홍원	신내 84-3				
5	67	전	381	23	전	장원춘	신내 66-5				
6	65-9	전	1563	36	전	임기만	신내 89				
7	65-35	답	336	32	전	임기만	신내 89				
8	118-1	대	44	5	대	김종현	신내 118-15				
9	123-23	답	1640	45	전	김성수	신내 166				
10	123-24	답	1172	26	전	임복순	구리시 인창동 78				
						임봉순	구리시 인창동 487-1				


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국

토 지 조 서

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

사업시행자 주소 :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7

사업의 종류 : 신내도시고속도로(신내입체시설-구리시계)건설공사

일 번 번호	소 제 지 지 번	지 목	지 적 (M)	권 입 면 적 (M)	실 제 이용 상 황	소 유 자		관 계 인			비고
						성 명	주 소	성 명	주 소	권리내용	
11	신내동 167	전	307	16	전	손 진 정	장안동92-17미모연립가동304호	권 태 향	강동구상일동134주공A404동510호	근저당	
12	53	전	3251	51	과	정대성외8인	서초구반포12신반포15차43동203호				
13	167-2	전	60	12	과	임 영 수	구로구 북산동 981-20				
14	48	전	234	17	과	임 인 섭	신내 27번지				
15	산8-2	입	71	40	과	(미동기)					
16	산7-2	입	421	90	입	전주이씨 화령군파 종중	서대문구 응암동 81-87				
17	산8-3	입	4912	380	과	임 석 봉	신내 190				
18	44-17	전	318	11	전	홍 태 옥	목동 122-118				
19	43	전	615	49	전	임 석 봉	신내 190				
20	44-3	전	645	28	전	홍 태 옥	북동 122-118				동양환경개발(주) 양수회천면덕계리350-3 근저당 중소기업은행중화지점 중구을지로2가36-1(중화지점)

공공기관
의
주
필

토 지 조 서

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

사업시행자 주소 :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7

사업의 종류 : 신내도시고속도로(신내입체시설-구리시계)건설공사

일련 번호	소재지 지번	지목	지적 면적 (M)	입적 면적 (M)	실제 이용 상황	소유자		관계인			비고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관리내용	
21	신내동 41-16	답	1698	35	전	김홍찬외1인	강동구잠실27아파트5 2동40				
22	11-3	전	195	15	전	전주이씨 화령군 파종중	서대문구 용암동 81-87				
23	10-2	전	2158	34	전	정정환	면목 412-4	삼성전자(주)	수원시권선구매탄동416	근저당	
24	산1-9	임	586	180	임	정일영외7인	망우동 307				
계				1,326							

원본대조필


물 건 조 서

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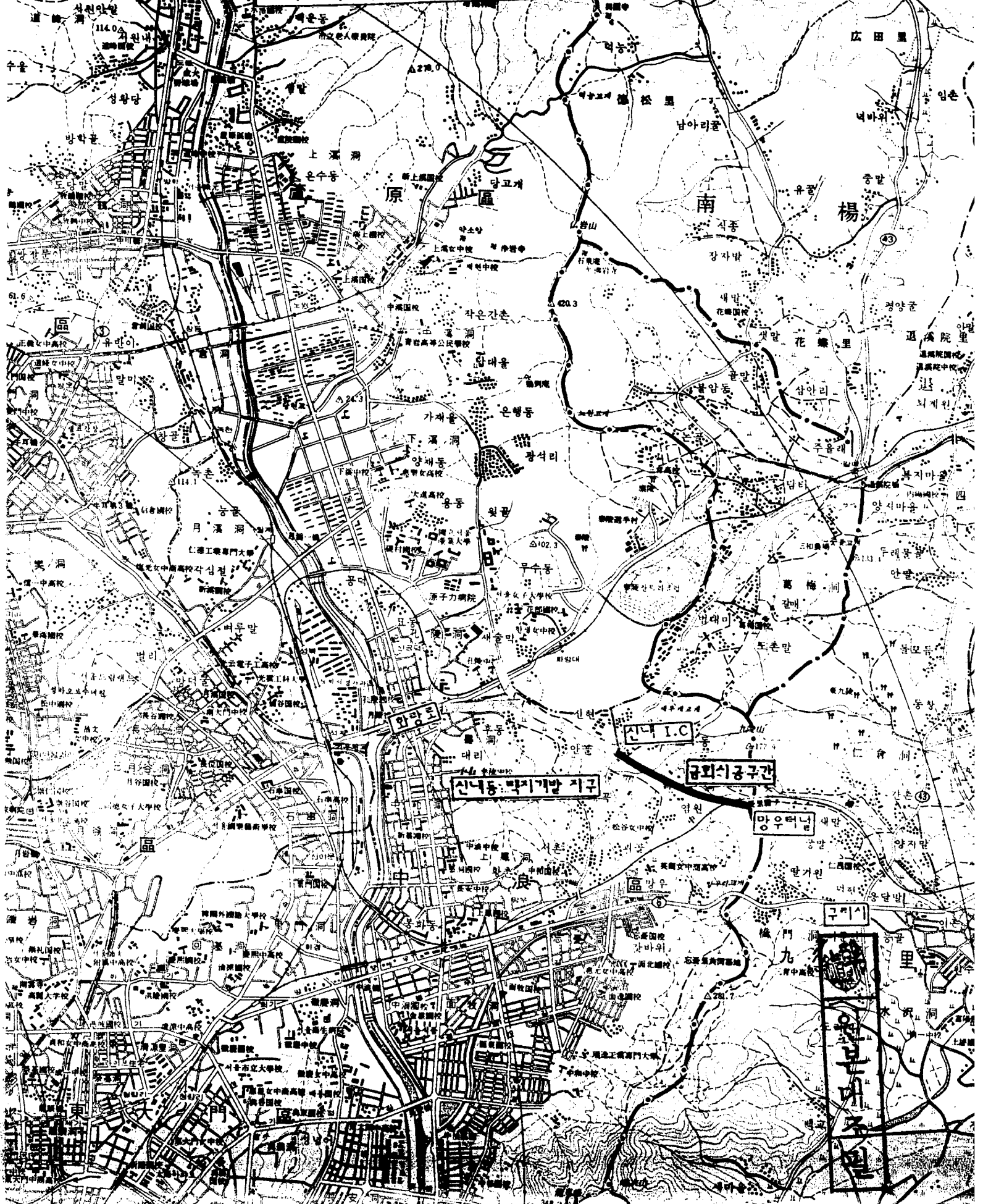
사업시행자 주소 :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7

사업의 종류 : 신내도시고속도로(신내입체시설-구리시계)건설공사

일련 번호	소 제 지 지 번	물 건 의 종 류	구 조 및 규 격	수 량	소 유 자		관 계 자			비고
				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	권리내용	
1	신내동 330-5 -	농업용관정		1기	신내동479중앙하이츠A2동606호하 종 택					
2	신내동 123-23	농업용관정		1기	신내동 146-3호 (1/8)		나 상호			
3	신내동 123-23	비닐하우스	비닐/철골	45M ²	신내동 146-3호 (1/8)		나 상호			
4	신내동 123-24	비닐하우스	비닐/철골	26M ²	신내동 146-3호 (1/8)		나 상호			
5	신내동 48	과 실 수	배나무	8주	신내동 27번지		임 인 섭			
6	신내동 산-8-3	과 실 수	배나무	32주	신내동 190		임 석 봉			
7	신내동 53	과 실 수	배나무	4주	구로구 독산동 981-20		임 영 수			
8	신내동 167-2	과 실 수	배나무	2주	구로구 독산동 981-20		임 영 수			


 원본의 조서

도시고속도로 (신내 I.C-구미시계간) 건설공사



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

우120-030 서울 서대문 합동127-1

/ 전화 (02) 362-4290

/ 전송 362-4289

문서번호 종건보일30500~2374
 시행일자 1992.10.29

수신 서울특별시장
 참조 건설행정과장

신청	과장	[Handwritten Signature]		시	
접	일자 시간	1992.10.29		결	거당 1/2
수	번호	6361		제	
	처리과			공	
	담당자			람	

재목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

1. 우리시고시 제 280호 (90.8.22)로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된 신내도시고속도로 (신내입체시설 ~ 구리시계) 건설공사의 변경인가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공람및 의견청취후 동법 제 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공사명 : 신내도시고속도로 (신내입체시설~구리시계) 건설공사
- 나. 변경내용

· 사업기간 변경

- 당 초 : 인가일로부터 24개월
- 변 경 : 인가일로부터 36개월

· 편입토지 변경

- 필지수 : 24필지 추가편입
- 면 적 : 1,326 제곱미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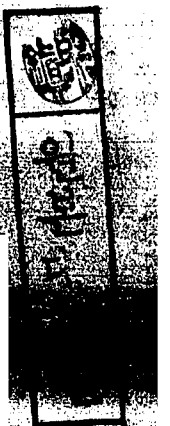
※ 기타— 변경사항 없음.

다. 의견청취 결과 : 재출의견 없음

- 첨부 : 1) 위치도 1부
- 2)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5부
- 3) 변경사유서 1부
- 4) 공람공고문 (일간지 게재) 사본 각 1부
- 5) 토지조서 (동기부 열람) 5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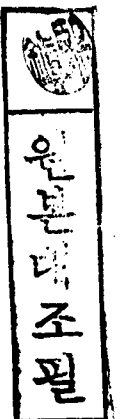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



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서

1. 사업시행지 : 중랑구 신내동 331의 2번지 ~ 신내동 산 1의 7번지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종 류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
 - 명 칭 : 신내도시고속도로 (신내입체시설 ~ 구리시계) 건설공사
3. 사업의 규모 (변경없음)
 - 도 로 : 폭 30미터, 연장 1,710 미터
 - 인터체인지 : 1개소 (교량 : 2개소)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(종합건설본부장)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
 - 변경전 : 인가일로부터 24개월
 - 변 경 : 인가일로부터 36개월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, 지번,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: 별첨 (추가편입토지 24필지, 면적 1,326 제곱미터)
7. 위치도 : 별 첨

첨부 : 변경 사유서 1부. 끝.



실시계획 변경인가 사유서

○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
- 명 칭 : 신내도시고속도로 (신내입체시설~ 구리시계) 건설공사

○ 변경신청인 :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장

○ 변경신청 사유

· 편입토지 : 도로개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토지의 추가편입

- 필지수 : 24필지 추가편입
- 면 적 : 1,326 제곱미터

※ 별첨 토지조서와 같음

· 공사기간 : 도로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을 위한 제반절차 이행등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을 변경코자 함.

- 변경전 : 인가일로부터 24개월
- 변 경 : 인가일로부터 36개월

○ 기 타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— 서울특별시 공고 제 1992- 252호 (92.10.1)

※ 일간지 게재 : 국민일보 및 세계일보 (92.10.2일자)



서류의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

○ 공람공고 : 서울특별시 공고 제 1992- 252호 (92.10.1)

○ 공고기간 : 1992. 10. 2 ~ 1992. 10. 15 (14일간)

○ 일간지 게재 (2개사)

 [국민일보 : 92. 10. 2자

 [세계일보 : 92. 10. 2 자

○ 의견청취 결과 : 의견사항 없음

첨부 : 중량구청의 의견청취 결과 통보 공문사본 1부.



1992年 10月 2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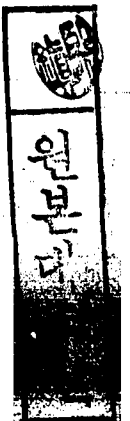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 공고 제1992-252호

도시계획사업(들) 실시계획
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174호(82년4월29일)와 제321호(83년6월24일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및 지적승인 되었으며 같은고시 제280호(90년8월22일)로 실시계획 인가된 신내도시고속도로(신내입체시설-구리시계)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하여 같은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람공고 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, 종합건설본부(토목1부)와 중랑구청(건설관리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 - 공고기간 : 1992년10월2일~1992년10월15일
 - 의견서 제출 :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(토목1부 : 362-3231-9)
 - 중랑구청(건설관리과 : 490-3400-1)

서울특별시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의 시행지 : 중랑구 신내동 331-2~신내동 산 1-7
2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사업(도로)
명칭 : 신내도시고속도로(신내입체시설-구리시계)건설공사
3. 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(종합건설본부장)
4. 사업개요
 - 도 폭 : 30m, 연장 1,710m
 - 인터체인지 : 1개소 및 교량 2개소
5. 사업확수및 준공예정일
변경전 : 인가일로부터 24개월
변경후 : 인가일로부터 36개월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및 건물외 조서, 지번, 지목 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: 공람장소에 비치된 내용과 같음
(추가권입토지 : 24필지, 면적1,326㎡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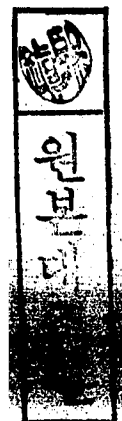


서울특별시 공고 제1992-252호
**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
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**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174호(82년 4월 29일)와 제321호(83년 6월 24일)로 도시계획사업(도로)결정 및 지적승인 되었으며 같은 고시 제280호(90년 8월 22일)로 실시계획인가된 신내도시고속도로(신내입체시설~구리시계)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하여 같은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람공고 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(토목1부)와 중랑구청(건설관리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 ○공고기간: 1992년 10월 2일~1992년 10월 15일
 ○의견서제출: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(토목1부) 362-3231~9; 중랑구청(건설관리과) 490-3400~1
 1992년 10월 2일

서울 특별시장

3. 사업의 위치: 중랑구 신내동 331-2~신내동 산 17
4. 사업의 종류: 도시계획사업(도로)
 번호: 신내도시고속도로(신내입체시설~구리시계) 건설공사
5. 사업장: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장
6. 사업개요:
 도로: 폭 30m, 연장 1.710m
 인터체인지: 1개소 및 교량 2개소
7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
 변경전: 인가일로부터 24개월
 변경후: 인가일로부터 36개월
8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외 조사, 지번, 지목과 소유권 취득의 권리의 명세서: 공람장소에 비치된 내용과 같은 것이 권입도서: 24필지, 면적 1,326㎡



중 랑 구

우 131-207 서울 중랑구 면목7동 777-1번지 전화 (02)490-3476 / 전송 491-0336

문서번호 30241 - *MA*

시행일자 1992. 10. 15

수신 종합건설본부장

참조 토목 1 부장

선결	<i>보관</i>	<i>MA</i>	지		
접	일자	1992. 10. 15	시		
수	번호	324 (1A)	결	<i>324</i>	<i>240</i>
	처리과	<i>324</i>	재		
	담당자	<i>이한기</i>	공		
			탐		

제목 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공람공고 결과통보

1. 증건토일 30500 2128호와 관련입니다.

2. 우리시 고시제 174호(92.4.29)와 제 321호(83.6.24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및 지적승인 되었으며 동 고시제 280호(90.8.22)로 실시계획 인가된 신내도시고속도로(신내 입체시설-구리시계)건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하여 공람공고 기간중(92.10.2 - 10.15) 이의신청 없음을 통보합니다. 끝.

이한기
296

<i>366</i>		<i>2.10.14</i>	
<i>362</i>			<i>시</i>
<i>-1080</i>			
<i>491</i>			
<i>-1063</i>			

중 랑 구 청 장

